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44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구자근 · 최수진 · 김성원
강승규 · 김선교 · 강대식
최은석 · 김도읍 · 강선영
조지연 · 정동만 · 김승수
박덕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내용으로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대상 정보 제공을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공익 홍보사업 또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내용으로 명시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8. (생 략) <u><신 설></u> <u>9.</u> (생 략) ② (생 략)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 -----. 1. ~ 8. (현행과 같음) <u>9.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콘텐</u> <u>츠 제작</u> <u>10.</u>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